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213578(본소), 2020가단233398(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84454(본소), 2021나84461(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21357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홍래, 이종창, 주옥, 이지윤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현

담당변호사 강신묵, 강찬우, 김동철, 이준규, 박창익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17. 7.경 체결된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8. 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 원고(반소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8. 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주식회사 E에게,
 - 가. 원고(반소피고) A는 위 제1항의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8. 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이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 나. 원고(반소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8. 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4132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0. 4. 10.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6,000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D에 대한 피보전권채권

피고는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326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6. 11. 30. ‘D은 피고에게 9,5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과 원고들 사이의 주식 처분행위

(1) D은 2017. 7.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A가 위 회사의 입찰방해 등 형사사건과 그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해 입게 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E 주식 10,000주 중 6,000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D은 위 주식양도담보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7. 8. 1. 원고 A와 사이에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E 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원고 A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A가 지명한 원고 B과도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주식회사 E의 주주명부상 D이 보유하던 10,000 주 중에서 3,000주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3,000주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각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D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세무당국의 움직임이 있자, 원고들은 세무사의 상담을 거쳐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을 양도로 신고한 것이 신고오류임을 주장하면서 2019. 12. 31. 기준 주식회사 E 주주명부상 D이 10,000주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54863호로 청구금액을 17,601,995,725원으로 하여 D이 보유한 주식회사 E 주식 10,000주 전부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000주는 원고 A에게, 3,000주는 원고 B에게 각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원고가 주식회사 E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로 원고들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외적으로 위 각 주식은 원고들 소유라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식양도담보 및 주식양수도계약이 원고들과 D이 통모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대항력 상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고, 아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D와 원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담보계약 및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주식 양도담보계약 및 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로 피고의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가 D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9,5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D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 양도담보 제공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D이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일부의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원고 A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 대표이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이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그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 중 6,0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위 주식 양도담보로 인하여 피고를 비롯한 D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과 D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D은 위 행위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원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고들의 선의 여부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 및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D 사이에 이루어진 위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들이 D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D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이상 수익자인 원고들은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상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000주는 원고 A에게,

3,000주는 원고 B에게 각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주식회사 E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2019년 주식회사 E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던 6,000주에 관하여 다시 D을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위 6,000주는 대외적으로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인바, 다만 주식회사 E의 주주명부상 이미 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들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원고들과 D 사이의 위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상철

별지

주식의 표시

상호 : 주식회사 E

1주의 금액 : 10,000원

주식의 수 : 10,000주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끝.

